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0가합575166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솔

담당변호사 신광현, 조하은

###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권주혁, 한규원

변론 종결 2023. 5. 23.

판결 선고 2023. 8. 8.

##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8. 11. 9. 체결된 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개명 전 D)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와 C의 자녀이다.

나. C은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7드합31029), 위 소송에서 2018. 6. 15. 'C과 원고가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C이 원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E 대 165㎡'과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동작구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되, 동작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하여 원고에게 2018. 10. 31.까지 3억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위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 조정조항

1. C과 원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서, 원고는 C에게 동작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C은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
3. C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75,000,000원을 2018. 10. 31.까지 지급한다.
4. 원고는 C으로부터 위 3.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서 퇴거한다.

#### (중략)

다. 원고는 2018. 7. 11.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C에게 동작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2018. 8. 17. F과 사이에 동작구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7.부터 2018. 10. 31.까지 수회에 걸쳐 F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다.

마. C은 2018. 10. 31.부터 2018. 11. 7.경까지 합계 8억 4,98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그중 6,000만 원을 2018. 11. 9.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증여하였다.

바. C은 2019. 12. 26. "C이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동작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은닉하기로 하고, 2018. 10. 31.경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라 F으로부터 잔금 8억 6,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중 8억 4,980만 원을 2018. 10. 31.경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강제집행면탈죄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613), 위 법원은 2020. 6. 16.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C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다.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033), C이 2021. 8. 19. 위 판결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C이 피고에게 위 6,000만 원을 증여할 당시 C은 원고에게 위 조정조서에 기한 재산분할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C 명의의 적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재산분할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유일한 재산인 동작구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한 후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은닉하면서 그중 6,000만 원을 2018. 11. 9.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C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은 피고에 대한 증여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피고는 C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딸인 피고의 계좌로 위 6,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그 후에도 C이 피고의 계좌, 신용카드를 지배·관리하면서 전반적인 생활비를 지출해왔으므로 위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계좌에서 결제된 카드 내역 중 일부가 C이 사용한 내역이라고 하더라도 2018. 12. 24. H카드 결제대금은 230,648원에 불과하여 위 증여액수와 비교하면 소액인 점, ② 위 6,000만 원은 입금 당일 곧바로 I채권에 예탁금으로 인출되어 위 계좌와 분리되어 관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고, 달리 반증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피고에게 2018. 11. 9. 6,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금전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점을 감안하면,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8. 11. 9.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C으로부터 증여받은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준민**

**판사최지은**

**판사김다연**